

#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

## 1. 개정이유

- 2017년 임금협약서 합의사항 반영
- 인사규정 승진소요연수 변동사항의 보수규정 반영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임금협약서 합의사항** : 『양 공사 통합관련 치우개선비와 복지포인트 임금 체계 반영분은 정액급(22만원)으로 임금체계에 반영하여 2017.10월부터 적용하고 향후 통합보수체계에 기본급화 한다.』  
→ 업무지원수당(보전수당)에 반영
- 나. 인사규정 변동사항 반영**(양 공사 통합 전·후)
- 변동사항 : 인사규정 5급 승진소요 최저근무기간 2년 → 3년  
『보수규정 : 대우수당은 5급 승진소요연수 4배수 경과 직원에게 지급』
  - 반영내용 : 5급 승진소요연수 8년 경과 직원에게 대우수당 지급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개정근거**
- 사규관리규정 제10조(임안)
  - 2017년 입단협 관련 노사합의서
- 나. 절차** : 부패영향평가 → 사규심의 → 사장결재 → 이사회 의결  
→ 개정·시행

- 붙임 1. 보수규정 개정(안)  
2. 보수규정 개정(안) 신규대비표. 끝.

붙임#1

#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

보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(변경전)

종전 서울메트로 직원에게 적용

수 당 명	지급률 및 지급액	비 고
10.업무 지원 수당 통상근무자	○ 통상임금의 15.00%	○ 통상근무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역무, 차량, 건축, 기계, 전자분야 교대근무자	○ 통상임금의 17.07%	○ 역무, 차량, 건축, 기계, 전자분야 교대근무자(3조2교대)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토목, 궤도, 전기, 신호, 정보통신, 관제분야 교대근무자	○ 통상임금의 16.39%	○ 토목, 궤도, 전기, 신호, 정보통신, 관제분야 교대근무자(3조2교대)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승무 교대근무자	○ 통상임금의 17.71%	○ 승무분야 교대근무자(3조2교대)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승무 교번근무자	○ 통상임금의 21.59%	○ 승무분야 교번근무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4급이하 2000년 이후 입사자	○ 7급1호봉 기본급의 4%	○ 대상자에게 분야별, 근무형태별 업무지원수당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종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에게 적용

수 당 명	지급률 및 지급액	비 고
8.보전수당	통 상 근 무 자 통상임금의 19.1%	· 통상근무자에게 지급한다.
	변형 통 상 근 무 자 통상임금의 20.7%	· 변형통상근무자에게 지급한다.
	3 조 2 교 대 통상임금의 19.1%	· 3조2교대근무자에게 지급한다.
	4조2교대자(시벌) 통상임금의 19.1%	· 4조2교대(시벌)근무자에게 지급한다.
	교 번 근 무 자 통상임금의 19.1%	· 승무 P/L을 포함한다.
9.대우수당	· 4급~5급 : 월 30,000원 · 7급1호봉 기본급의 4%	· 4급은 당해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고 5급은 승진소요연수 4배수 경과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보수규정 개정(안) 신규대비표

(변경후)

종전 서울메트로 직원에게 적용

수 당 명	지급률 및 지급액	비 고
10.업무 지원 수당	통상근무자	○통상임금의 15.00%+22만원 ○통상근무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	역무,차량,건축,기계,전자분야 교대근무자	○통상임금의 17.07%+22만원 ○역무, 차량, 건축, 기계, 전자분야 교대근무자(3조2교대)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	토목,케도,전기,신호,정보통신,관제분야 교대근무자	○통상임금의 16.39%+22만원 ○토목, 케도, 전기, 신호, 정보통신, 관제분야 교대근무자(3조2교대)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	승무 교대근무자	○통상임금의 17.71%+22만원 ○승무분야 교대근무자(3조2교대)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	승무 교번근무자	○통상임금의 21.59%+22만원 ○승무분야 교번근무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	4급이하 2000년 이후 입사자	○7급1호봉 기본급의 4% ○대상자에게 분야별, 근무형태별 업무지원수당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종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에게 적용

수 당 명	지급률 및 지급액	비 고
8.보전수당	통 상 근 무 자	통상임금의 19.1%+22만원 · 통상근무자에게 지급한다.
	변형 통상근무자	통상임금의 20.7%+22만원 · 변형통상근무자에 지급한다.
	3 조 2 교 대	통상임금의 19.1%+22만원 · 3조2교대근무자에게 지급한다.
	4조2교대자(시범)	통상임금의 19.1%+22만원 · 4조2교대(시범)근무자에게 지급한다.
	교 번 근 무 자	통상임금의 19.1%+22만원 · 승무 P/L을 포함한다.
2014.1.1.이후 입사자	7급1호봉 기본급의 4% · 대상자에게 근무형태별 보전수당에 가산하여 지급한다.	
9.대우수당	· 4급~5급 : 월 30,000원 · 4급은 당해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고 5급은 승진소요년수 8년 경과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	

부 칙 ('17. . 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종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에게 적용하는 별표2의 9항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적용하고, 종전 서울메트로 직원에게 적용하는 별표2의 10항 및 종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에게 적용하는 별표2의 8항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현행	개정(안)	비고
신설	<p>부 칙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종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에게 적용하는 별표2의 9항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적용하고, 종전 서울메트로 직원에게 적용하는 별표2의 10항 및 종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에게 적용하는 별표2의 8항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	

### 보수규정 개정(안) 신규대비표

현행		개정(안)		비고
[별표 2] 제수당지급기준(제16조 관련) □ 종전 서울메트로 직원에게 적용		[별표 2] 제수당지급기준(제16조 관련) □ 종전 서울메트로 직원에게 적용		
수 당 명	지급률 및 지급액	수 당 명	지급률 및 지급액	비 고
10.업무 지원 수당	통상근무자 ○통상임금의 15.00%	통상근무자 ○ 통 상 임 금 의 15.00% <b>+22만원</b>	○통상근무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	○통상근무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	역무, 차량, 건축, 기계, 전차 분야 교대근무자 ○통상임금의 17.07%	역무, 차량, 건축, 기계, 전차 분야 교대근무자 ○ 통 상 임 금 의 17.07% <b>+22만원</b>	○역무, 차량, 건축, 기계, 전차 분야 교대근무자(3조2교대)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	○역무, 차량, 건축, 기계, 전차 분야 교대근무자(3조2교대)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	도목, 궤도, 전기, 신호, 정보통신, 관제분야 교대근무자 ○통상임금의 16.39%	도목, 궤도, 전기, 신호, 정보통신, 관제분야 교대근무자 ○ 통 상 임 금 의 16.39% <b>+22만원</b>	○도목, 궤도, 전기, 신호, 정보통신, 관제분야 교대근무자(3조2교대)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	○도목, 궤도, 전기, 신호, 정보통신, 관제분야 교대근무자(3조2교대)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	승무 교대근무자 ○통상임금의 17.71%	승무 교대근무자 ○ 통 상 임 금 의 17.71% <b>+22만원</b>	○승무분야 교대근무자(3조2교대)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	○승무분야 교대근무자(3조2교대)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	승무 교번근무자 ○통상임금의 21.59%	승무 교번근무자 ○ 통 상 임 금 의 21.59% <b>+22만원</b>	○승무분야 교번근무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	○승무분야 교번근무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4급이하 2000년 이후 입사자 ○7급1호봉 기본급의 4%	4급이하 2000년 이후 입사자 ○7급1호봉 기본급의 4%	○대상자에게 분야별, 근무형태별 업무지원수당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	○대상자에게 분야별, 근무형태별 업무지원수당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	

### 보수규정 개정(안) 신규대비표

현행		개정(안)		비고
[별표 2] 제수당지급기준(제16조 관련) □ 종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에게 적용		[별표 2] 제수당지급기준(제16조 관련) □ 종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에게 적용		
수 당 명	지급률 및 지급액	수 당 명	지급률 및 지급액	비 고
8.보전수당	통 상 근 무 자 통상임금의 19.1%	통 상 근 무 자 통상임금의 19.1%	-	통상근무자에게 지급한다.
	변형통상근무자 통상임금의 20.7%	변형통상근무자 통상임금의 20.7% <b>+22만원</b>	-	변형통상근무자에게 지급한다.
	3 조 2 교 대 통상임금의 19.1%	3조2교대 통상임금의 19.1% <b>+22만원</b>	-	3조2교대근무자에게 지급한다.
	4조2교대(사범) 통상임금의 19.1%	4조2교대(사범) 통상임금의 19.1% <b>+22만원</b>	-	4조2교대(사범)근무자에게 지급한다.
	교 번 근 무 자 통상임금의 19.1%	교 번 근 무 자 통상임금의 19.1% <b>+22만원</b>	-	승무-DL을 포함한다.
9.대우수당	4급~5급: 월 30,000원	4급~5급: 월 30,000원	-	4급은 당해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고 5급은 승진소요년수 4배수 경과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